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의학적 사유·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·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·보존 지원을 위해 개정된 「모자보건법」 제11조의7 제2항의 시행규칙 위임 규정에 따른 ‘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’을 규정하고자 함 (안 제12조의5 신설)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10. ~ 12월) 예정, 특기할 사항 없음

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5(생식세포 동결·보존 등을 위한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) ①

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7제2항에 따라 생식세포 동결·보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13조의2의 의학적 사유가 있는 자의 생식세포(정자·난자) 동결 및 보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식세포 동결·보존 등을 위한 지원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(신설)	제12조의5(생식세포 동결·보존 등을 위한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7제2항에 따라 생식세포 동결·보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13조의2의 의학적 사유가 있는 자의 생식세포(정자·난자) 동결 및 보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식세포 동결·보존 등을 위한 지원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